

연구시설·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

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|--|--------|--|
| 신청기관 | 기관명 | | | |
| | 기관구분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부출연연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생기연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,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연구개발목적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비영리기관 | | |
| | 대표자 | | | |
| 실무연락 책임자 | 부서명 | | 직 위 | |
| | 성 명 | | 연락처 | |
| | FAX | | E-Mail | |

우리 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10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·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※ 제출서류 :

1.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1부.
2. 자체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서류 1부.
3.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 1부(필요시).
4.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(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) 1부(필요시).

년 월 일

연구개발기관장:

(직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